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 추가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30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7. 23.
3. 회부연월일: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학교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 추가

개정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등) ① ----- ----- ----- -----, -----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생략) ②·③ (생략)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범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3만 2,104건에서 감소하여 2020년에 3만 10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2,793건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8,535건이 증가하여 4만 1,433건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추이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32,104	32,029	30,105	32,898	41,433
전년 대비 증감	△720	△75	△1,924	2,793	8,535

주: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각 연도에 형사입건한 사건 수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3.1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

또한 해당 법령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이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²⁾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1)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2)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shp.mogef.go.kr>)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제고 등을 위하여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³⁾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공시정보 홈페이지⁴⁾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공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 대학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공시정보 ‘범위’에 추가된 바 있는데,⁵⁾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항목’를 규정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제13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 중 하나로 추가된 것임.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유치원 공시정보: 유치원 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5)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1호, 2019.9.10. 개정, 2019.9.10. 시행)

[표 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상 공시대상정보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u>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u>

자료: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중 해당 조항

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이외에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만, 공시대상정보가 추가되는 것으로 인해, 입력 대상 자료가 증가하거나 입력된 자료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법률에서 공시정보 항목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공시정보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시행령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공시정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정 법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이미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개별 기

관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과 정보공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공시 대상정보 추가를 검토하여 보겠으나, 전국 유·초·중·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99%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한 중복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항목 추가를 실시하더라도 세부 공시항목은 기술적·실무적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법률에 근거를 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이미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정보 범위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규정되어 있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서 공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에 근거를 둘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시·도교육청⁶⁾에서는 이미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

6)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교육청

육 실시 현황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항목이 추가될 경우 이중 업무 발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